

##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

사 건 2000가단000 토지인도 등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.

## 변경한 청구취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,
  - 가. ○○시 ○○동 산○○ 임야 99㎡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24.5㎡ (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8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) 및 시 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및 화장실 6.5㎡(별지도면 표시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)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(별지도면 표시 ㄷ, ㄹ, ㅁ, ㅂ, ㅅ,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)를 인도하고.
  - 나. 19○○. ○. ○.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○○○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변경한 청구원인

1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분할 전 ○○시 ○○동 산○○ 임야 614m²(다음부터 '분 할 전 이 사건 토지'라 합니다)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 1인인 소외 ●●©로 

- 2. 피고는 원고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○○. ○. ○. 이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동 74㎡(별지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) 및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및화장실 1동 6.5㎡(별지도면 표시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과부분)을 지어 분할 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99㎡ 부분(다음부터 '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'라 합니다)을 배타적으로 점유, 사용・수익하여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였습니다.
- 3. 피고의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를 사용 · 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액
  - 가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분할 후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하여 왔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를 사용·수익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  - 나. 또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, 19○○. ○. ○. 분할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0.○. ○.까지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의 차임은 월 ○○○원 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됩니다.
  - 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○○. ○. ○. 분할 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○○○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

## 4. 결 어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,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, 19〇〇. 〇. 〇. 분할 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에 해당하는 월 〇〇〇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

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제○민사단독 귀중

제출법원	본안소송 계속법원	제출기간	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(변론 왕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친고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. 위 서식에서는 별지도면 이 생략되어 있으나, 실제로 소장을 작성 할 경우 별지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	불 복 절 차 및 기 간	할 때까지)(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)  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 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비 용	함. 인지액: ○○○원(□ 산정방법), 변경으로 증가된 소송목적의 값에 대하여 각 심급별 소정의 인지첩부 ※ 소송목적의 값에 변경이 없을 경우 500원인지 첨부		
기 타	<ul> <li>소변경불허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,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음(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누5096 판결).</li> <li>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음(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다41435 판결, 1994. 10. 14. 선고 94다10153 판결).</li> <li>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,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,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44416 판결).</li> </ul>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 소장의 보정, 반소